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
(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구 미 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금오산도립공원내 로컬푸드직매장 방문객 증대 및 농산물 판매 공간 확대 필요성에 따라 로컬푸드직매장을 추가 건립하고자 함
- 대경선 개통 이후 방문객 증가에 따른 관광 활성화와 구미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로컬푸드직매장 및 기념품 판매소를 건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위치 : 상모동 111번지(박대통령 생가·역사자료관 주차장)
- 대상 : 건물 1동[지상 1층, 연면적 570㎡(172평)]
- 기준가격 : 4,700백만원(공사비, 설계감리비, 인테리어, 예비비 등)
- 사업비 : 4,700백만원(시비 4,700)
 - 사업비 산출내역
 - 공사비 3,800, 설계·감리비 등 320, 인테리어, 예비비 등 580
 - ※ 토지는 시유지로 보상비 및 매입 불필요
- 사업기간 : 2025 ~ 2027년
- 주요시설
 - 로컬푸드직매장(500㎡) : 매장, 사무실, 소포장실 등
 - 기념품판매소(70㎡)

○ 추진현황

-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 '25. 6.
- 지방재정 투자심사 : '25. 6.

○ 향후추진계획

- 건축기획용역 실시 : '25. 8.
- 사업비 확보 : '25. 12.
-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실시설계용역 : '26. 1.
- 행정절차 이행(문화재구역현상변경 등) : '26. 8.
- 원감심사 및 입찰 : '26. 10.
- 착공 ~ 준공 : '27. 1 ~ 12.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 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1건	570	4,700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건	570

취득 재산목록(총괄)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사 유	재산 소유자	비고
	재산 구분	소재지	수 량 (m ²)					
총계			570	4,700				
취득	건물	상모동 111	570	4,700	2027년	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구미시	신축

위 치 도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2차) 비용추계서 (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박대통령 생가 앞 로컬푸드직매장 및 기념품 판매소 건립

2. 비용추계의 전제

- 목조건물유형기준 참조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출	○ 공사비	3,800	-	-	-	-	3,800
	○ 설계비	320	-	-	-	-	320
	○ 인테리어	580	-	-	-	-	580
	계	4,700	-	-	-	-	4,7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도비		-	-	-	-	-	-
시비		4,700	-	-	-	-	4,700
민간		-	-	-	-	-	-
기타		-	-	-	-	-	-
합계		4,700	-	-	-	-	4,700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사정에 따라 재정수반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농식품산업과 먹거리정책팀 정미애(054-480-5923)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총계	4,700		
공사비	소계	3,800	
	건축	3,800	● 건축,기계,소방,통신,전기 등 - 172평(570㎡)*2,200만원/평(목조건물유형기준)
시설부대경비	소계	320	
	설계비	22	● 건축기획용역
		220	● 설계용역 - 공사비 * 요율(4.45%)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20-635호)
		20	● BF인증
	감리비	44	● 제2종(보통) 1.16% 적용
	시설부대비	14	● 공사비 * 요율(0.36%) ※ 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타	소계	152	
		152	● 인테리어 공사 용역 및 시행 ※ 2022년 금오산점 공사비에 물가상승율 반영 ※ 기념품판매소 인테리어 포함(20백만원)
예비비	소계	428	
		428	● 공사비+보상비+시설부대비+기타 10%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소 관 부 서		회 계 과 (농식품산업과)
입 안 자	과 장	임 응 건 (신 미 정)
	팀 장	정 세 황 (이 효 증)
	담 당 자	정 민 주 (480-5073) (정 미 애) (480-5923)